



뉴욕 재개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저위험군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지침

본 지침은 **재개**를 허용 받은 모든 실내 박물관, 역사 유적지, 수족관, 기타 유관 기관 및 활동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위험군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Low-Risk Indoor Arts and Entertainment)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모든 실내 박물관, 역사 유적지, 수족관 및 기타 유관 활동 소유자/운영자는 저위험군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물리적 거리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과 고객/방문자 등 모든 사람이 반드시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한 경우에만 기관 입장을 허용하고 수용 인원을 최대 수용 인원의 25 퍼센트 이하로 제한합니다. 단, 이러한 조항은 2세 이상이며 페이스 커버 착용이 의학적으로 가능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 모든 사람(고객/방문자 및 직원) 간의 최소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단, 기관을 방문하는 단체가 모두 동일한 가구 구성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안전 또는 핵심 활동을 위해 짧은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사람들은 반드시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 ✓ 직원이 고객/방문객과 접촉할 경우(티켓 판매 등)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직원 및 고객/방문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타인과 6피트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경우 항상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좁은 장소에서 열리는 전시회의 경우, 최대 수용 인원을 계산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합니다. ✓ 기관 내부 및 기관으로 입장하는 이동 흐름을 관리/통제하여 수용 인원 의무조항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모임 규모에 대한 제한을 강제하기 위해 직원/보안 인력을 강화합니다. ✓ 동일한 가구 구성원에게만 그룹 투어를 허용하고, 직원 및 고객/방문자 등을 포함해 사회적 모임에 대한 최대 수용 인원 의무 조항을 항상 준수합니다. ✓ 고위험군 인터랙티브 전시(고객/방문자가 물건을 만지거나 착용해야 하는 전시 등)를 중단합니다. ✓ 어린이 놀이터 또는 놀이기구가 있는 전시를 폐쇄합니다. 단, 놀이터/장비를 이용한 어린이가 동일 가구 또는 단체에 속하지 않은 경우, 타인이 사용하기 전 해당 장소/전시장을 청소, 소독, 살균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크닉 구역과 벤치가 6피트 거리 이상 떨어져 있도록 배치하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 폐쇄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이 모든 방향(좌우 및 서로 마주할 경우)에서 최소 6 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떨어져 있고 사용 사이에 청소 및 소독 없이 근무 스테이션을 공유하지 않도록 근무 스테이션 및 직원 좌석 구역의 수를 제한/변경합니다. ✓ OSHA 지침에 따라 퇴근 등록기, 안내 센터, 티켓 키오스크에 직원과 고객/방문자 간의 물리적 장벽을 설치합니다. ✓ 고객/방문자가 사전에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입하도록 권장합니다. ✓ 혼잡을 막기 위해 티켓 발행 시 방문 시간을 지정합니다(시간이 정해진 입구/출구 사용 등). ✓ 가능한 최대로 별도의 입구/출구를 지정합니다. ✓ 고객/방문자 대기 구역(선, 주차장 등) 재배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좁은 통로, 복도 등 일반적으로 줄이 형성되거나 사람들이 집합할 수 있는 모든 공용 공간(티켓 구매줄, 엘리베이터 입구, 전시장 앞, 출/퇴근 스테이션, 건강 검진 스테이션 등)에서 6 피트의 거리를 화살표가 표시된 테이프 또는 표지판을 사용하여 양방향 이동 흐름을 완화합니다.

WEAR A MASK.

GET TESTED.

SAVE LIVES.



뉴욕 재개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저위험군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지침

본 지침은 **재개**를 허용 받은 모든 실내 박물관, 역사 유적지, 수족관, 기타 유관 기관 및 활동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위험군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Low-Risk Indoor Arts and Entertainment)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모든 실내 박물관, 역사 유적지, 수족관 및 기타 유관 활동 소유자/운영자는 저위험군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물리적 거리두기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한 경우, 산업별 DOH 지침에 따라 운영을 실시합니다. 	
보호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고객/방문자가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한 경우에만 기관 입장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고객/방문자가 2세 이상이고 페이스 커버 착용이 의학적으로 가능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고객/방문자가 공용 구역에 있거나 6피트 거리 유지가 어려운 상황(시설 입장/퇴장, 폐쇄된 좁은 전시장 이용, 직원과 접촉 등), 동일한 가구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6피트 내에서 접촉할 경우,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직원이 타인과 6피트 내에 있을 때 항상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직원은 예기치 않게 타인과 6피트 거리 이내에 있는 경우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은 고객/방문자와 접촉할 때 언제나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무료로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교체용 커버를 적절히 제공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페이스 커버에는 천(수제 봉제, 임시 가리개, 두건 등), 수술용 마스크, 페이스 쉴드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페이스 커버를 세탁, 교체 및 공유하지 마십시오. PPE에 대한 정보와 사용 및 청소에 대한 지시 사항은 CDC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직원에게 PPE를 착용, 탈착, 세척(해당되는 경우), 폐기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직원 간 장비의 공유뿐만 아니라 공유 표면을 만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는 직원이 공유 물건 및 자주 만지는 표면과 접촉할 때 장갑(무역 관련 또는 의료)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직원이 접촉 전후에 손 위생 절차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WEAR A MASK.

GET TESTED.

SAVE LIVES.



뉴욕 재개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저위험군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지침

본 지침은 **재개**를 허용 받은 모든 실내 박물관, 역사 유적지, 수족관, 기타 유관 기관 및 활동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위험군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Low-Risk Indoor Arts and Entertainment)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모든 실내 박물관, 역사 유적지, 수족관 및 기타 유관 활동 소유자/운영자는 저위험군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위생, 청소 및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및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의 위생, 청소, 소독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 날짜, 시간, 범위를 기록한 기록을 현장에 보관하십시오. ✓ 비누, 따뜻한 물 및 일회용 종이 타올로 손을 씻는 것 또는 손 씻기가 가능하지 않거나 실용적이지 않은 곳에서는 알코올을 60 퍼센트 이상 함유한 알코올 기반 손소독제를 포함하여 현장에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 및 유지합니다. ✓ 공용 구역 전체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전시장 근처 등). ✓ 공유물 및 자주 접촉하는 표면(문 손잡이, 티켓 판매소 등)에 적합한 청소 및 소독 용품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표면을 사용하기 전/후에 직원이 이러한 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지역 및 자주 접촉하는 구역을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하고, 건물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코로나19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제품을 사용합니다. ✓ 고객/방문자가 사용한 헤드셋/장비를 매 사용 후 적절하게 소독하지 않는 한, 대여/임대를 중단합니다. ✓ 일회용품(지도 등)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매 사용 후 세척 및 소독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노출된 구역의 청소 및 소독을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청소 및 소독은 최소한 모든 수송 구역을 포함한 자주 접촉하는 표면(뱃지 스캐너, 화장실, 난간, 문 손잡이, 자판기, 공용 커피 스테이션 등)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발생한 후, 시설 청소에 대한 CDC 지침을 준수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 지도, 팸플릿 가이드를 사용할 경우, 이것을 고객/방문자에게 제공합니다. ✓ 가능한 경우 지도, 팸플릿, 가이드 등 디지털로 제공해 개인 전자 기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가능하면 안전 예방 프로토콜을 준수하면서 실외 공기로 환기합니다(창문 및 문 열기 등).

WEAR A MASK.

GET TESTED.

SAVE LIVES.



뉴욕 재개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저위험군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지침

본 지침은 **재개**를 허용 받은 모든 실내 박물관, 역사 유적지, 수족관, 기타 유관 기관 및 활동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위험군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Low-Risk Indoor Arts and Entertainment)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모든 실내 박물관, 역사 유적지, 수족관 및 기타 유관 활동 소유자/운영자는 저위험군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가 지정한 업계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이행할 것임을 보증해야 합니다. ✓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하도록 직원/고객/방문자에게 상기시키도록 장소 전체에 표지판을 게시하십시오. ✓ 현장에 완성된 안전 계획을 눈에 띄게 게시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및 고객/방문객을 위해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적용 가능한 교육, 표지 등 직원과 고객/방문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관된 수단이 포함됩니다.
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개시 전 직원에게 필수 건강 선별 검사(설문지, 체온 검사 등)를 매일 실시하며, 가능한 경우 하청업자와 벤더(그러나 고객/방문객 또는 배송 인력은 의무 사항 아님)에게도 실시하여 (승객에게는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음), (1) 지난 14일간의 코로나19 증상, (2) 지난 14일간 코로나19 검사 양성 결과 및/또는 (3) 지난 14일간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사례와의 근접 또는 밀접한 접촉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답변 내용을 매일 검토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 그 결과를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현장 안전 계획의 모든 측면을 지속적인 준수를 포함한 책임을 담당하며 현장 안전 모니터를 임명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들이 선별 결과가 나오기 전 서로 근접 또는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원격 선별 실시 등). ✓ 선별자는 고용주가 임명한 CDC, DOH 및 OSHA 프로토콜 숙지자가 진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소한 페이스 커버를 포함하여 적절한 PPE를 착용해야 합니다. ✓ 체온 검사는 또한 고용 기회 균등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는 DOH 지침에 따라 실시될 수 있습니다. ✓ 근무지 또는 구역에서 타인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직원 및 하청업자, 벤더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기록을 보관합니다. ✓ 고객/방문자가 건강 선별지 작성을 완료하거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 직원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한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경우 프로토콜과 정책에 대해서는 DOH 지침을 참조하십시오.